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1108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2.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65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3. 체결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6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1. 3. 24. 접수 제134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10. 5. 소외 C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4122호로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2. 9. 27. 선고 2002가합11734 판결)에 의한 채권 중 일부인 “3,923,492원에 대한 1998. 12. 25.부터 2002. 8. 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26.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갖고 있던 D은 2020. 12.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C, E, F, G, 피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상속분 각 1/5).

② C, E, F, G,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지분 전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분 전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1. 3. 24. 접수 제13478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인 C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1/65 지분($= 11/13 \times 1/5$)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1/6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1층 265.19㎡

2층 265.19㎡

3층 265.19㎡

4층 265.1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북구 대 70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60.0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70890분의 4035

- 이상 -

